<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 coffee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www.bastacoffee.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홈페이지

이메일 주소 hadeboy82@hanmail.net

[봄바스타 커피]

정 보 공 개 서

[봄바스타 커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봄바스타 커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 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33번길 23(사직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88-364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88-3642

т	가매보브이	일반 현황
Ι.	10LT-	2C CS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1 11 11 11 11 11	어어 게 나에 귀취 사내취 저는이 사이기가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π	가매보브이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Щ.	10 <u>-</u> T-1	
VШ.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	주 소						
	봄바스타 🤊	커피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47번길 30-2, 1층(사직동)						
봄바스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픽		대표팩스번호			
커피 가맹본부	개인사업자		2023. 6. 1.	김태경외 1명	15	88-3642	_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병	번호	521-	56-0073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1) -5		봄바스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47번길 30-2, 1층 (사직동)					
대표	김태경	커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경	1588-3642	_			
			부산광역시 동리	내구 사직북로47번	길 30-2, 1층			
공동	이현경	봄바스타		(사직동)				
대표		기현경 커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현경	1588-3642	_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봄바스타 커피]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봄바스타 커피	-
상 호	봄바스타 커피 00점	_
상표(서비스표)	₹ coffee	상표 등록번호: 4017087700000
광 고	_	-
그 밖의 영업표지	Bombasta coffee	상표 등록번호: 401917277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5,222		
2022년				383,798		
2023년				496,29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리서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금	연 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2020. 6. 1.~	봄바스타 커피 대표	직영점 운영 및			
가맹사업	김태경	경 공동대표	2023. 5. 31.	금마스다 기퍼 대표	가맹점 관리 총괄			
관련 임원		00417	2023. 6. 1.~현재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관리 총괄			
			2023, 0, 1, 연제	공동대표	/ 1 8 년 년 5 년 			
가맹사업	이현경	공동대표	2023. 6. 1.~현재	봄바스타 커피	가맹사업 일반			
관련 임원	기선/3	00円正	2025, 0, 1,~ 연재	공동대표	/1.971月 担任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Z-J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작전구(영 <i>)</i>
2023년 12월 31일	2	_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이력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Bombasta coffee	인테리어, 간판, 상징물, 광고홍보물, 집기비품 등에 표기	4020220070306 (2022. 4. 14)	4019172770000 (2022. 10. 5.)	김태경	2032. 10. 5.
₹ coffee	인테리어, 간판, 상징물, 광고홍보물, 집기비품 등에 표기	4020200013121 (2020. 1. 25.)	4017087700000 (2021. 3.27.)	김태경	2031. 3. 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봄바스타 커피] 가맹사업 현황

1. [봄바스타 커피]를 시작한 날: 2020년 1월 2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6월 1일)

2. [봄바스타 커피] 연혁

가맹본부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상호	의 된 표 기	의 이름	/[경시[협 성경 /[신 	구된 사구소의 소세시 		
봄 바스타커피	봄바스타	김태경	2023.6.1.~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47번		
가맹본부	커피	이현경	2023.0.1.~ 원세	길 30-2, 1층 (사직동)		
봄바스타커피	봄바스타	기미가	0000 10 15 0000 5 01	보시기 무게그 기기보고 2 2 비기 0 2		
(국민시장점)	커피	김태경	2022.10.15.~2023.5.31.	부산시 동래구 시직북로33번길 23		
바스타커피	바스타	김태경	2020.6.1~2022.10.14.	부산시 동래구 시직북로33번길 23		
(국민시장점)	커피	선대경	2020.0.1~2022.10.14.	구선시 중대구 시작국도33번설 23 		

3. [봄바스타 커피] 업종

영업표지	성 년	조		
H.J. J. J.J.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봄바스타 커피	커피	커피, 에이드 외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022.12.31.			2023.12.31.		
\\ \frac{1}{3}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1	1	15	14	1	20	20	0
서울									
부산	9	8	1	9	8	1	9	9	0
대구	-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1	1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1	1	_	2	2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	_	_	_	_	_	_	_	_
경북	-	_	_	_	_	_	_	_	_
경남	3	3	_	5	5	_	8	8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7				11
2022	11	4		1		14
2023	14	8		2		20

^{※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첨2를 확인하십시오.

6. [봄바스타 커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이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도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F 매출액(연간 ³ 매출액(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20							
서울	_							
부산	9							
대구	_							
인천	_							
광주	_							
대전	1							
울산	_							
세종	_							
경기	_							
강원	_							

충북	_				
충북 충남	2				
전북	_				
전남	1				
경북	-				
경남	8				
제주	_				

※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8.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봄바스타 커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 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20	57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봄바스타 커피]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사직동 지점	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24 카람빌딩	051-558-111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나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하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u>www.kebhana.com)에</u> 접속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자세한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전화(1588-355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보상보험제도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봄바스타 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000				
가입비	5,000	계약체결과 동시지급	가맹사업법 제10조 사유발생시		장소선정 지원비, 가맹사업 오픈상 담·지원 등
교육비	2,000	계약체결과 동시지급	교육시작 1일전에 계약 해지		점포운영 매뉴얼, 동영상 제공 등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			
(현금)보증금	1,0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계속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000
가입비	5,000
교육비	2,000
보증금	1,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협력업체	50,00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21,000	2,1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즉시	공사 전 계약취소	33㎡(10평)기준 3.3㎡ 늘어날 때 마다 1,600천원 추가부담
외부간판	협력업체	4,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공사 전 계약취소	전면로고LED, 사인물(4M기준)
기기 및 집기	협력업체	21,000		계약일	주문 전 계약취소	에스프레소커피2구 머신1, 자동그라인더 1(말코닉), 제빙기1, 블렌더1, 자동 핫 디 스펜서1, 테이블 냉 장고1, 냉동고1
홍보물	협력업체	1,000		계약일	주문 전 계약취소	내외부 사인물, 홍보물, 앞치마 등
기타품목	협력업체	3,000		공사 시작 즉시		블루투스 스피커1, 컵 디스펜서2, 거품기1 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철거, 전기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각종 가구류, 자동 템핑기(추가 100만원), 제빙기(100kg)용량 업(추가 200만원) 등 견적외 품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설계도면(2D도면 기준) 제공비와 감리 대가로 40만원(3.3㎡당 금액, 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 문의처: 점포개발담당자 [010-9988-1753]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 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미성년자가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가맹금 등 분납제도

당사는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전부 일시불로 결재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당사	월 200	익월 5일	_	후불	
수시교육비	당사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1일전	교육개시 전 계약 해지	교육개시	교육내용에 따라 금액은 변경됨
전국(지역)단위 상품광고 분담금	당사	가맹본부 30% 가맹점전체70%	광고계획통지 일로부터 14일 이내	미반환	소멸성비용	광고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 협의
전국(지역)단위 판촉비 분단금	당사	항목별 협의분담	추후협의	미반환	소멸성비용	광고시점에 서면을 통한 별도 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협의	추후협의	_	ı	39~40페이지 참조
시설·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협의	교체·보수시	_	-	-
POS 임대료	협력업체	해당 없음	_	_	-	_
지연이자	당사	연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원부재료사용	가맹본부가 제공한 원부재료의 사용 및 사입여부 조사	월별 1회	문의: 가맹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월별 1회	문의: 가맹본부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의 준수 및 위생기준 준수를 확인하는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 할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내역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초기 가맹계약 기간이 지나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 경우와 가입비가 면제된 경우는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봄바스타 커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귀하는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도에 따른 추가적 발생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해지 일 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상환이 지연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는 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변제 일까지 연체된 채무액의 연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 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 $(10\%\sim90\%)$ 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봄바스타 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봄바스타 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2) 당사가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바스타 시그니처	스무디	딸기	① 당사가 제공한	1회 위반:
허니자몽아메리카노	플레인요거트	바나나	조리기준에 따라	구두 경고
바스 라떼	딸기요거트	딸바	제공할 것	
바스 크림라떼	블루베리요거트	키위		2회 위반:
너트 크림라떼	청포도요거트	토마토	② 왼쪽에 기재된	서면
달고나 크림라떼	딸기	오렌지	이외의 제품을 판	시정요구
수박 주스	블루베리	케일	매 할 수 없음	3회 이상 위

허니인삼	망고스무디	쉐이크		
커피	민트초코	밀크		
수퍼사이즈아메리카노	한라봉	초코	③ 판매를 원할	
아메리카노	쿠키앤크림	커피	경우 본부와 협의	
카푸치노	초코자바	치즈&딸기	후 서면 동의를 받을 것	반: 계약 해
카페라떼	녹차	팥빙수] 민글 것 	지
바닐라라떼	에이드	차		
헤이즐넛라떼	레몬	아이스티복숭아		
시나몬라떼	블루레몬	녹차		
돌체라떼	석류	얼그레이		
카라멜마끼아또	딸기	캐모마일		
카페모카	오렌지	페퍼민트		
흑당라떼	자몽	레몬차		
다방커피	청포도	자몽차		
라떼	블루베리	석류차		
초코라떼	청포도&자몽	매실차		
민크초코라떼	모히또&깔라만시	청귤차		
녹차라떼	버블티	유자차		
홍차라떼	바닐라밀크 버블티	생강차		
오곡라떼	흑당밀크 버블티	우유		
토피넛라떼	초코라떼 버블티	스팀밀크		
딸기라떼	홍차라떼 버블티	바닐라밀크		
달고나라떼	녹차라떼 버블티	카라멜밀크		
	타로 버블티	헤이즐넛밀크		
	생과일쥬스	흑당밀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귀하가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원)
바스타 시그		스무디	(4, 4, 4,	<u></u> 딸기	3,800
허니자몽아메리카노	2,800	플레인요거트	4,000	바나나	3,800
바스 라떼	4,000	딸기요거트	4,000	딸바	3,800
바스 크림라떼	3,800	블루베리요거트	4,000	키위	3,800
너트 크림라떼	4,000	청포도요거트	4,000	토마토	3,800
달고나 크림라떼	4,000	딸기	4,000	오렌지	3,800
수박 주스	4,800	블루베리	4,000	케일	4300
허니인삼	5,800	망고스무디	4,000	쉐이크	
커피		민트초코	4,000	밀크	4,000
수퍼사이즈아메리카노	2,000	한라봉	4,000	초코	4,000
아메리카노	1,500	쿠키앤크림	4,000	커피	4,000
카푸치노	2,800	초코자바	4,000	치즈&딸기	4,000
카페라떼	2,800	녹차	4,000	팥빙수	4,000
바닐라라떼	3,300	에이드	차		
헤이즐넛라떼	3,300	레몬	3,800	아이스티복숭아	2,800
시나몬라떼	3,800	블루레몬	3,800	녹차	2,800
돌체라떼	3,800	석류	3,800	얼그레이	2,800
카라멜마끼아또	3,800	딸기	3,800	케모마일	2,800
카페모카	3,800	오렌지	3,800	페퍼민트	2,800
흑당라떼	3,800	자몽	3,800	레몬차	3,300
다방커피	2,800	청포도	3,800	자몽차	3,300
라떼		블루베리	3,800	석류차	3,300
초코라떼	3,300	청포도&자몽	3,800	매실차	3,300
민크초코라떼	3,300	모히또&깔라만시	3,800	청귤차	3,300
녹차라떼	3,300	버블티		유자차	3,300
홍차라떼	3,300	바닐라밀크 버블티	3,800	생강차	3,300
오곡라떼	3,300	흑당밀크 버블티	4,300	우유	
토피넛라떼	3,800	초코라떼 버블티	4,300	스팀밀크	2,300
딸기라떼	4,300	홍차라떼 버블티	4,300	바닐라밀크	2,800
달고나라떼	4,300	녹차라떼 버블티	4,300	카라멜밀크	2,800
		타로 버블티	4,300	헤이즐넛밀크	2,800
		생과일쥬:	스	흑당밀크	3,300

2023년 12월 기준 가격이며, 당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통보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 한 입장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커피류 등 음료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음식점	봄바스타 커피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기존 가맹점을 중심으로 도보 500m 를 기준으로 함	네이버 지도를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봄바스타 커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_	-	_	_

- ※ 당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어 국내 온라인·오 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봄바스타 커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 서	기간(계약만료일:
I	도 시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D 100 D 0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 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00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D-00일 의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9	조 제1항
○ [봄바스타 커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 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	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별도로 구매하여 판매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총매출액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1년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40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		
○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과 교육이수를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와 다른 가	1	
맹점사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당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7된 경우	개시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서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 ¹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쿠의 카메사엉병
ㅇ 삭제 <2020. 4. 28.>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현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한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의한 근거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아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서비스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레40고 레이ձ나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제42조 제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문의:가맹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금원을 영업개시일 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 운영권의 대리나 위탁운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 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 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 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불가능	_	_	
업무위탁	불가능	_	_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봄바스타 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매장 에서 즉석형태로 만든 후 판매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		문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설날, 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개장	문의: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매장 규모에 따라 다름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월	가맹본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매월	가맹본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매월	가맹본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매월 1회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별도의 체크리스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점검내용에 대하여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고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두		분담 절차	비고	
1 4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는 다 크기 	~ -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전체광고비 비용의 3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 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 액 제시 →가맹점의 광고 부담금 납부(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역 언론 매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 개시		
판촉행사	공동판촉 활동	현	탈로그의 제작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 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당사와 사전에 혐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납입한 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배상하여야 할 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계약해지 요청일	위약금	비고	
예치가맹금 납입 후 영업개시이전	가입비의 70%	부가가치세 없음	
영업개시 후	최초가맹금의 150%	부가가치세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 일십만 원(₩ 10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제42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제1항 또는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한 당사의 손해액은 가맹계약서제14조제1항 **최초가맹금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제42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액은 부당영업매출의 50%를 기본 손해액으로 간주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제42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약별로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부가가 치세 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에서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등을 사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벌로 **사입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액은 계약 해지 일부터 **남은 계약일** × **금 오만** 원정(₩ 50,000 부가가치세 없음)을 일시불로 산정하고 그 최대한도는 금 이천만 원정(20,000,000 부가가치세 없음)으로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2p~16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5일 내외소요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하나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 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기 표 결의 	비중구함 세러자비
ㅇ점포의 시설,	ㅇ간판교체 비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일
장비, 인테리	용	또는 이전을	비용 청구(공사계	로부터 3년 이내
어 등의 노후	ㅇ인테리어 공	수반하지 않	약서 등 공사비용	에 가맹본부의
화가 객관적	사비용(장비·	는 점포환경	을 증빙할 수 있	책임없는 사유로
으로 인정되	집기의 교체	개선 : 20%	는 서류 첨부) →	계약이 종료(계
는 경우	비용을 제외	ㅇ점포의 확장	90일 이내에 가맹	약의 해지·영업
ㅇ위생이나 안	한 실내건축	또는 이전을	본부 부담액을 가	양도 포함)되는
전의 결함으	공사에 소요	수반하는 점	맹점사업자에게	경우 가맹본부
로 인하여 가	되는 일체의	포환경개선	지급	부담액 중 잔여
맹사업의 통	비용. 단, 가	: 40%	(단, 가맹본부와 가	기간에 비례하는
일성을 유지	맹사업의 통		맹점사업자간 별도	부담액은 지급하
하기 어렵거	일성과 무관		의 합의가 있는 경	지 아니하거나
나 정상적인	하게 가맹점		우 1년의 범위내	이미 지급한 경
영업에 현저	사업자가 추		에서 분할지급 가	우에는 환수 가

한 지장을 주	가 공사를 실	느)	느
는 경우	시함에 따라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	
	소요되는 비	맹본부 또는 가맹	
	용은 제외)	본부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	
		에는 점포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	
		급	
		ㅇ 가 맹 점 사 업 자 의	
		비용 청구(공사계	
		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3	
		차에 걸쳐 가맹본	
		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	
		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	
		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이내, 총 부담	
		액의 40%)	
		즉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 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봄바스타 커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제조, 재고관리 물품주문, POS 사용 등	이론+실습교육	영업개시 10일 전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비정기적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봄바스타 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양자간 합의에 의해 최소시간은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2시간	2,000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수시 교육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에 따라 다름	교육개시 1일전까지 지급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개점 전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0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개점이 보류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커피, 음료, 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별첨1.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2. [봄바스타 커피] 가맹점 및 직영점의 상세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3. 가맹금 예치신청서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MII II -1 M 0	글 러포 그용에게기 의답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난 법률」 제6조의5제1형 ∥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		법 시행령	제5조의	의9제2	할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귀하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 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